

# 特許의 登錄과 權利保護와의 相關性(1)



李 華 植  
〈特許廳 登錄課 行政事務官〉

## 1. 特許登錄의 重要性

不動産에 對하여 不動産登記制度가 存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 (以下 特許라 稱함)에 對하여도 特許登錄制度가 있다. 特許登錄制度는 特許에 關한 權利에 對하여 特許權의 內容이나 移轉, 變更, 消滅等 權利의 一定事項을 特許廳에 保存하고 있는 特許原簿에 登錄하고 이를 一般에게 公示함으로써 去來의 安全을 圖謀하는 制度이다.

特許原簿에 登錄할 事項은 特許關係法令에 部分的으로 規定하고 있지만 大體로 特許를 出願한 後 特許廳으로부터 登錄査定 또는 登錄審決의 謄本을 接受하고 權利者의 申請에 依해 登錄原簿에 最初로 登錄하는 設定登錄으로부터 權利가 存續하는 期間동안 登錄原簿에 記載하는 모든 事項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 (以下 特許權이라 稱함)內容의 大部分은 登錄原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의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하거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即 登錄을 함으로써 實體法上 權利의 效力이 發生하게 된다.

간혹 特許權者中에는 特許登錄의 重要性을 認識하지 못한 些少한 不注意로 本意아니게 特許權이 權利存續期間內에 消滅되거나 侵害當하는

境遇가 있다.

例컨대 特許權은 最初의 登錄料 納付로서 權利가 設定登錄되지만 登錄된 後에도 每年次分の 登錄料를 法定期間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면 이미 登錄된 權利라 할지라도 特許權者가 權利를 拋棄한 것으로 看做하여 納期 翌日부터 當該 特許權이 削滅 登錄된다.

그러므로 特許權을 權利存續期間동안 계속 維持하고 正當하게 保護를 받으려면 權利者 스스로가 特許登錄節次나 特許料 納付內容을 熟知하고 있어야 한다.

本欄에서는 特許登錄制度中 特히 알고 있어야 할 主要事項을 實務次元에서 整理提示함으로써 一般의 理解와 關心을 促求하는 한편 現行特許登錄制度의 運用上의 問題와 改善方向을 模索코 저한다.

## 2. 特許權의 設定登錄 및 維持를 위한 特許料納付上의 留意事項

### 1) 特許(登錄)料와 手數料 一覽

단위 : 원

區分	權利別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
特許	1~ 3年 (一括)	15,000	12,000	12,000	52,000
	4~ 6年 (每年)	8,000	7,000	7,000	—
登	7~ 9年 ( " )	16,000	13,000	13,000	—

區分	權利別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	
登錄 10~12年(每年)	32,000	26,000	26,000	—	
料	計	183,000	150,000	150,000	52,000
其他登錄料	移轉 { 相續	3,000	3,000	3,000	3,000
	其他	14,000	9,000	9,000	28,000
	實施, 使用權	8,000	8,000	8,000	8,000
	實施權 { 相續	1,200	1,200	1,200	1,200
	移轉 { 其他	2,000	2,000	2,000	2,000
	存續期間更新	—	—	—	70,000
	表示變更·更正, 消抹	1,200	1,200	1,200	1,200
	假登錄	2,000	2,000	2,000	2,000
	管理人選任 및 變更	2,000	2,000	2,000	2,000
	質權	債權價額의 5/1,000	債權價額의 5/1,000	債權價額의 5/1,000	債權價額의 5/1,000
	質權 { 相續	1,200	1,200	1,200	1,200
	移轉 { 其他	2,000	2,000	2,000	2,000
	信託登錄	5,000	5,000	5,000	5,000
手數料	出願人名義變更	2,000	2,000	2,000	2,000
	期間延長	—	—	—	3,000
	登錄證再交付	1,000	1,000	1,000	1,000
	登錄原簿寫本(面當)	100	100	100	100
	閱覽(件當)	100	100	100	100
地方稅	公告料(5매 기준)	8,000	8,000	—	—
	新規登錄	—	—	—	2,500
	移轉 { 相續	4,000	4,000	4,000	4,000
	其他	6,000	6,000	6,000	6,000

※ 地方稅額은 20%의 防衛稅額을 加算하여야 함.

## 2) 最初登錄料 納付와 設定登錄

特許料 實用新案登錄料 意匠登錄料는 登錄査定 또는 登錄審決의 謄本을 받은 날로부터 3個月以內 最初 3年分의 特許登錄料을 納付하면 當該特許權에 對한 特許原簿가 作成備置되고 特許權이 登錄되며 權利로서 效力이 發生하게 된다. 만일 特許登錄料를 3個月의 納期內에 納付하지 못한 境遇에는 繼續해서 6個月의 追納期間에는 當初金額의 2倍를 納付하여야 한다.

특히 商標의 境遇는 登錄査定 또는 審決의 謄本을 받은 날로부터 30日以內 10年分의 登錄料를 一時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納付期間을 延長하고자 할 때는 當初 納期經過前에 商標登錄料納付期間延長申請書를 特許廳에 提出하여 30日에 限하여 延長을 받을 수 있다. (特許料登錄

料와 手數料 徵收規則 第7條 3항 내지 5항) 이때 延長申請은 1次에 限하며 特許나 實用新案과 같이 追納期間이나 過怠料도 認定되지 않는다.

公告料(特許, 實用新案)는 1981. 9. 1日 以後 出願分에 限하여 最初 3年分의 特許登錄料 納付 시까지 納付하면 된다. 即 登錄料納付와 同時에 納付하면 便利하다.

以上과 같이 最初登錄料納付로서 當該 特許權은 獨點排他的인 權利로서 登錄되고 特許權者는 特許(登錄)證을 交付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納期가 經過된 후 特許廳에 提出된 特許登錄料納付書는 不受理되며 登錄의 機會를 상실하게 되고 特許權으로서의 保護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銀行에 過誤納付된 特許登錄料는 納付된 날로부터 5年內에 納付者의 請求에 의하여 返還된다. 請求時는 納付領收證과 印鑑을 持參하여 特許廳 收入貸替公務員에게 申請하면 還拂된다.

## 3) 4年次分부터 納付

特許權은 各己 그 存續期間이 있는바 이 存續期間 동안 계속 權利를 維持하려면 特許登錄料를 納付하여야 하는데 存續期間中 4年次分부터는 特許權者와 利害關係人도 納付할 수 있다. 여기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을 가지고 있는 者 또는 質權이나 債權을 가지고 있는 者를 말한다. 이들 利害關係人은 原特許權者가 故意로 特許料를 納期內에 納付하지 않아 當該權利가 消滅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面도 있으나 權利存續에 對하여 至大한 利害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利害關係人이 納付한 特許登錄料가 原權利者의 意思에 反한 納付일 때는 利害關係人은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權利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民法 第739條 1項 및 3項).

4年次分부터의 特許料 納付時期는 最少限 每年 1年分씩 權利存續期間 起算日을 基準하여 그 前年度에 納付하여야 한다. 이 年次分 納付도 6月의 追納期間이 認定된다(特許料 登錄料와 手數料 徵收規則 第7條 6項).

特許料 納付時 特히 注意할 事項은 特許權存續期間日 算定基準이다. 權利存續期間 起算日은 特許와 實用新案과 같이 公告가 있는 때에는 公

告日이 되고 意匠과 같이 公告가 없는 때에는 登錄日이 起算日이 된다.

예컨대 權利存續起算日이 1981. 10. 10이라면 4年次分 特許料는 1984. 10. 10까지, 5年次分은 1985. 10. 10까지 納付하면 된다. 이때도 納期翌日부터 6月의 追納期間이 認定된다.

#### 4) 特許料 一括納付

特許登錄料는 4年次分부터는 그 納付年次順에 따라 數年分 또는 모든 年次分을 一時에 納付할 수 있다. 이때 納付된 特許登錄料는 納付後 法令改正으로 料金の 變更이 있을 때에도 이미 納付된 것으로 본다.

特許權者는 奔走한 日常生活로 인한 特許料納期錯誤를 豫想하여 指定된 辨理士에게 納付를 委任하거나 數年分 또는 全額을 一括納付하는 事例가 많아지고 있다. 全額을 一括納付하여 두면 特許權이 權利存續期間까지 安全하게 維持될 뿐만 아니라 以外の 神經을 쓸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反對로 登錄된 特許權의 內容이 企業성이 희박하거나 技術이 陳腐하여 權利를 더 以上 存續시킬 必要가 없거나 또는 無效審判等으로 特許權이 實效될 優慮가 豫想되면 特許料 一括納付는 非經濟的이라 할 수 있다. 左右間 重要的한 特許權에 對하여는 特許料의 一括納付가 權利維持의 安定이나 人力과 時間의 節約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特許料 納付免除

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對象者가 發明考案하여 出願하면 그 出願에 對한 出願料와 最初 3年分의 特許料는 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特許料登錄料와 手數料徵收規則 第7條 9項). 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對象者는 住居地邑面 또는 洞事務所에 登載되어 있으므로 生活保護對象者가 特許料와 手數料를 免除받을려면 住居地 邑面長 또는 洞長이 發給하는 零細民(生保者) 事實確認書를 料金納付書에 添付하여 特許廳에 提出하면 免除받을 수 있다. 特許料納付免除는 國家所有 特許權도 該當된다.

#### 6) 特許料不納으로 인한 特許權의 消滅과 回復

特許權의 消滅原因에는 最終審判에 의한 無效나 取削도 있지만 一般的으로 特許料의 不納, 權利存續期間의 滿了, 相續人의 不在, 權利의 拋棄等을 列擧할 수 있다. 그중 特許料 不納으로 인한 權利消滅原因이 納付義務者의 納期錯誤나 不注意로 起因한 때는 더욱 억울할 것이다. 이와 같이 特許料 不納으로 消滅된 權利는 다시 回復이 不可能하다.

特許制度에 特許料 納付와 特許權의 有限性을 規定하는 것은 獨占排他的인 權利를 一定期間權利者에게 부여하여 發明家를 保護하는 面도있으나 他面에 있어서는 技術의 進步向上과 國家의 産業發展에 이바지 하는 兩面的인 調和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 7) 特許料 納付方法

特許料, 登錄料 및 手數料는 現金으로 韓國銀行 또는 韓國銀行 國庫收納取扱代理店에 納付하여야 한다. 그리고 納付後 納付領收證(書類添付用)을 所定書式인 特許料納付書에 添付하여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特許登錄令 施行規則 第10條 12項)

단일 銀行에 特許料를 指定된 納期內에 納付하고도 納付領收證을 納期經過할 때까지 特許廳에 提出하지 않으면 特許權을 拋棄한 것으로 看做하여 特許廳長 職權으로 當該特許權을 削滅登錄하게 된다.

이런 境遇 納期經過後 特許料納付者가 銀行에 納付한 正當한 領收證(書類添付用)을 提出하면서 消滅된 權利의 回復을 要求할 때 特許料納付時點을 銀行에 納付한 日字를 基準할 것인지 아니면 特許料 納付書를 特許廳에 提出한 日字를 基準할 것인지에 對하여는 明示規定이 없다. 그러나 特許料納付는 特許廳이 指定한 銀行에 所定期日內 納付하면 有效한 納付로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消滅된 權利가 回復될 境遇 消滅登錄으로 인하여 發生한 第三者의 被害나 權利紛爭에 對한 責任은 納期內 特許料納付書提出義務怠慢으로 特許權者에게 歸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特許料와 手數料 納付方法을 現金으로 銀行에 納付케 한 現行制度는 料金納付日字의 時效가

權利行使에 重要한 關鍵이 되므로 納付의 正確과 安全을 期하기 위하여 銀行納付制度를 採擇하였다. 그러나 民願人에 對한 不便도 적지 않다.

即 民願人이 特許料나 手數料를 納付코자 할 때 申請書式은 特許廳에서 交付받아 所定金額은 銀行에 納付하고 納付한 領收證을 다시 申請書에 添付하여 特許廳에 提出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民願人의 不便을 多少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重要한 權利關係가 아닌 各種證明申請, 閱覽, 複寫等 小額手數料納付 方法을 收入印紙로 代替하므로 特許廳 民願窓口에서 申請書式과 함께 收入印紙를 調達, 바로 申請이 可能하도록 關係法令 改正을 推進中에 있으므로 늦어도 來年부터는 實現될 것으로 본다.

〈계속〉

◇(案) 「특허·실용신안색인집」 (內)◇  
발간에 따른 수요측정

본회는 지난 1948년부터 1978년까지의 특허·실용신안 색인집 발간에 이어 1979년부터 1983년 까지 5년간의 특허·실용신안 공고분을 출원인별, 분류별(IPC), 공고번호별로 색인집을 다음과 같이 발간코자 하오니 필요량을 기입하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체 제 : 국배판

지 질 : 표지 하드카바, 내지 모조 80g

인 쇄 : 표지 금박인쇄, 내지 청타 8P 마스타

예상면수 : 1,620면 (1권당 540면)

1면당 수록건수 : 45건 기준

총수록건수 : 24,188건

발간물종류 : 특허 실용신안공고번호별색인 (1979년~1983년)

〃 출원인별색인 ( 〃 )

〃 분류별(IPC)색인( 〃 )

가 격 : 1질당 (3권) 70,000~80,000원

(단, 가격은 수요측정결과에 따라 다소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연 락 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조사부

(13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중앙중묘빌딩 7층)